

2023년 10월 17일

Preview

기업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현행법상 기준뿐 아니라 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업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으로 규정한 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업무 행위 및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있었던 위메프 개인정보 노출 사건 판결에 드러난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위메프 사건 1, 2, 3심 판결을 통해 확인된 개인정보 관련 법리의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민후 소식 Minwho News

'가상자산(이더리움)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SW개발 용역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서 배상액 크게 감액하며 승소'

리걸이슈

위메프 사건 1, 2, 3심 판결을 통해 확인된 개인정보 관련 법리의 정리

[들어가며]

대법원은 2023. 10. 12. 선고한 2022두68923 판결에서, 위메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 당시 직원의 실수로 캐시 정책이 잘못 설정되어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위반시의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고려 요소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심급별로 유의미한 법리의 확인이 있었기에, 이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4
E. choijs@minwho.kr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628):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이 정한 보호조치의 내용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결을 캐시 정책 설정 오류에 적용]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2021. 8. 19. 대법원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위 <조치>의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취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최초로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8두56404).

그런데 마침 위메프 사건 1심이 그 직후인 2021. 8. 27. 변론종결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캐시 정책 설정 오류가 위 제4조 제9항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고, 1심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취하여야 하는 조치 등은 그 유형이나 종류가 광범위하여 해당 법령이나 구 보호조치 기준에서는 다소 개략적으로 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㉔ 이 사건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에서도 ‘홈페이지 설계·구현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위반사례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이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결과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거나, 피고가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위반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이벤트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원의 설계 오류 및 캐시 설정 변경에 대한 영향도 미확인 등 원고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은 명백한바...

즉 직원이 실수로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설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 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위 제4조 제9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고 이는 확정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은 위 제4조 제9항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수범자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장했다. 때문에, 위 제4조 제9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위메프 사건 1심 판결의 판단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참조할 필요가 있다.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누73975): ‘관련성’은 불확정개념으로 하위 규범이 구체화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관련매출액’을 시행령과 고시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시행령과 고시가 구체화할 때에, 다른 법률과 달리,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위메프 사건 2심에서는 이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령과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주장이 명시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도 요구되었다.

그런데 마침 2022. 5. 26. 위 관련매출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0헌바259 결정이 있었고, 위메프 사건 2심은 2022. 9. 30. 변론종결되었기에, 2심 법원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위 시행령과 고시는 모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판결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관련성’ 부분은 불확정개념으로서 하위 규범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시행령이 ‘관련성’ 개념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시행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의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분야의 일반적인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위반행위의 기간’은 과징금 부과시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기간이 짧은 경우까지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더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이러한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구체화하였고, 위 전체매출액 역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위메프 사건 2심 판결 역시 향후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①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범위와 ②과징금 부과시의 재량권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

위메프 사건의 2심 판결은 시행령과 고시가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위 <서비스> 범위를 ‘이 사건 이벤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의 웹서버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웹서버가 서로 분리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관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경로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캐시 설정 오류는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만 발생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 사건 쇼핑몰 이용자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것으로서, 그 개인정보는 이 사건 쇼핑몰 서비스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되는 정보이고,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관리된 정보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 매출액도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인 이 사건 쇼핑몰 서비스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이 사건 쇼핑몰 웹사이트에서의 접근경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 사건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독립된 접근경로를 가진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사건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외견상 구분되는 독자적인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이 사건 쇼핑몰과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쇼핑몰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분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단 하루, 직원의 단순 실수로, 20명의 개인정보가 29명의 다른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유출되어 추가 피해 우려가 매우 작았다는 점, 그리고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현행 규정이 과징금 면제사유를 규정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시 취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관련매출액 산정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문제의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게 맞고, 다만 경미한 위반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여부 자체 등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번 판시를 위해 고려한 제반 사항들은 현행법에서도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의 판시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리걸이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작성 목차

지난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개인정보의 수집 등의 근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필수 동의 사항 즉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동의'가 아니라 제4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는 반드시 선택 동의이고,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가입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원가입시 필수 동의창이 제시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령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법 해석상 필수 동의창을 통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 15조 1항 1호에 근거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며, 필수 동의창 내에 제시된 개인정보 항목들 중에서 1) 실제로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이 항목들은 필수 동의창 내에 포함되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15조 1항 1호에 기반하여 수집되는 항목들이 아니라 법 15조 1항 4호에 기반하여 수집되는 항목들이고, 2) 위 1)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정보 항목들은 반드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법 22조 5항에 따라 이는 필수 동의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률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 동의창 내에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할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골라내는 것이 지금 바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정사항 안내서'를 첨부파일로 제공드리며, 이에 더하여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및 목차'를 함께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민후 소식

가상자산(이더리움)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들을 대리한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들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가 전무했으나 민후는 지난 6월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후는 가상화폐에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치를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집행관 인도 및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압수물이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후 소식

SW개발 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서 배상액 크게 감액하며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과 관련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요구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지 및 수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한 SW개발 용역 계약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원고의 계약 파기 통지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7 수준의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기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